

『실세금리 저축예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를 거쳐 예금 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실세금리저축예금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개요

- 상품명 : 실세금리 저축예금 (MMDA)
- 상품특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서 예치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입니다.

2. 거래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계좌개설 확인서 내용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법인
상품유형	실세금리 저축예금 (MMDA)
가입금액	제한없음
거래방법	- 신규 : 서울지점 영업점 - 해지 : 서울지점 영업점
이자지급시기	매월 28일에 계산하여 그 익일(원가일)에 원금에 더함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더라도 이자지급의 방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기본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은 고객이 예치한 총수신금액이 홈페이지 게시된 금액 이하인 법인 거래처에 대하여 기본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예금주의 별도 지시없이 매월 10일에 20만원의 기본수수료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고객별 1건) - 기본수수료 납부 고객에게는 매월 소정의 이체 수수료 면제 등 은행 홈페이지(https://www.gbm.hsbc.co.kr/useful-information/cmb-charge)에 게시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본이자율	은행 홈페이지 게시(http://mail.hsbc.com.hk/kr/PWS_daily/kr/copinterest_rate.htm)	
이자 산출근거	예금이자는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에 최초 예금일 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해당 원가일 전일까지를 부리기간으로 하고,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 또는 은행과 거래처간에 합의된 이율로 계산함.	
계약의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해지신청서 제출을 통한 해지 - 해지시 불이익 : 해당 없음 	
연계·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방법	서울지점 영업점을 통해 해지 가능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기업자금관리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담당심사역(RM), 고객관리담당자 또는 기업자금관리부 (hsbc.korea.gps@kr.hsbc.com 또는 02-2004-0168)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s://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